

문서번호	BSKS-1-1-44
제정일자	2020.03.03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5

2020.03.03.제정 2020.04.21.개정 2020.07.03.개정 2020.09.25.개정 2022.04.15.개정 소판부서 : 산학처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(이하 "본 대학"이라 한다.) 구성원이 성폭력·성희롱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, 피해자의 보호와 상담 및 가해자에 대한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① "성폭력"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 관련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행위를 말한다.
 - ② "성희롱"이라 함은 성폭력범죄행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 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,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, 신체적, 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.
 - ③ "피해자"라 함은 성폭력·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.
 - ④ "가해자"라 함은 교내 성희롱·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에서 피신고인의 행위가 성폭력·성희롱으로 의결된 사람을 말한다.
 - ⑤ "신고인"이라 함은 성폭력·성희롱의 발생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.
 - ⑥ "피신고인"이라 함은 성폭력·성희롱 행위가 지목되어 신고된 사람을 말한다.
 - ⑦ "사건관련인"이라 함은 피해자, 가해자, 신고인, 피신고인, 참고인 등 당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.
 - ⑧ "2차 가해"라 함은 당해 사건을 누설하거나 사건관련인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,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접촉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,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·축 소하거나 사건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관련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① 이 규정은 본 대학의 정관, 학칙 및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대상한다.
 - ② 피해자만이 제1항에 포함될 경우도 이 규정은 적용된다.
 - ③ 피해자만이 제1항에 포함될 경우는 가해자 측의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사건을 처리한다.



문서번호	BSKS-1-1-44
제정일자	2020.03.03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5

④ 성폭력·성희롱으로 신고된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위 변화는 그 적용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.

- 제4조(예방교육) ① 총장은 성희롱, 성매매, 성폭력, 가정폭력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.
 - ② 본교의 정관 및 인사규정에 적용을 받는 교원 및 직원은 성희롱, 성매매, 성폭력, 가정폭력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각 주제별 매년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을 해마다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
 - ③ 본교 학칙적용을 받는 학생은 성폭력, 가정폭력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각 주제별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
 - ④ 교육대상에 따라 교무처, 사무처, 학생산학취업처 행정부서 등은 교내 양성평등상담소와 협력하여 교육을 계획하고 운영한다.<개정 2020.09.25.>
 - ⑤ 교내 양성평등상담소는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, 총장은 그 결과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여성가족부에 보고한다.
- **제5조(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의무)** ① 사건처리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은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.
 - ② 피해자는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. 단, 이는 피해자가 본 규정에서 정한 사건처리 절차를 따라야 함을 전제로 한다.
 - ③ 사건처리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은 사건관련인의 동의 없이 사건관련인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.

제2장 담당기관

제1절 양성평등상담소

- 제6조(설치) 총장은 학생상담센터 내에 양성평등상담소(이하 "상담소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- 제7조(구성) ① 상담소에는 센터장을 두며 운영과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상담소에는 성폭력 성희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등의 자질을 갖춘 상담교수를 두어야 하며 그 자격과 기준은 상담소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에서 정한다.
 - ③ 운영위원회는 성폭력 성희롱 예방과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및 상담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센터장의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.
 - ④ 운영위원회 구성은 센터장, 상담교수, 여성교수, 기획처장를 당연직으로 정한다. 이외 남성교수 2인을 위원으로 정한다. 이때 남성교수는 당연직의 임원들과 구성의 균형



문서번호	BSKS-1-1-44
제정일자	2020.03.03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3/5

- 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과, 전공을 고려해 정한다.
- 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- ⑥ 운영위원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기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업무)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
- 1. 성폭력·성희롱 피해의 상담 및 피해자 보호 조치
- 2. 신고이전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시 사건해결을 위한 중재
- 3. 신고된 사건에 대한 상담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에의 보고
- 4. 성폭력·성희롱 피해자 치유상담 및 가해자(사건관련인 포함) 재교육
- 5. 성폭력·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 등 성평등한 대학문화 조성

제2절 성희롱ㆍ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

- 제9조(설치) 총장은 성폭력·성희롱의 예방과 사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시 성희롱·성폭력고충 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한다.
- 제10조(구성 및 업무) ① 심의위원회는 총장의 차하급자를 위원장으로 하며 교수대표, 교직원대표, 학생 대표를 위촉하여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위원 한쪽 성이 60%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.
 -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, 연임할 수 있다.
 - ③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씩 연2회 개회한다.
 - ④ 임시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.
 - 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
 - 2.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
 - 3. 성폭력·성희롱 상담실에서 성폭력·성희롱 사건의 처리를 요청 또는 보고 받았을 때
 -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⑥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 - 1. 성폭력 예방과 대책 수립
 - 2. 성폭력 사건의 조사·중재
 - 3.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
 - 4. 상담실에 대한 조사의 지시, 보고의 청취 및 기타 지휘, 감독
 - 5.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
 - ⑦ 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.

제3장 성폭력 • 성희롱 사건의 처리



문서번호	BSKS-1-1-44
제정일자	2020.03.03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4/5

- 제11조(신고 등) ① 신고는 피해자 및 제3자도 가능하며, 제3자도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.
 - ② 상담소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상담소 이외의 학내 기관에서 신고를 접수 또는 인지한 때에는 이를 즉시 상담소에 이첩하여야 한다.
 - ③ 상담소는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는 즉시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다.
 - ④ 센터장은 신고된 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심의·의결)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-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사건을 직접 조사하거나 중재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 - ③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성폭력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.
- 제13조(징계 및 조치) ① 심의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한다. 징계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해당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-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.
 - 1. 피해자 보호 조치
 - 2. 가해자의 사과
 - 3. 가해자에게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
 - 4.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2차 가해를 할 경우 가중 징계요구
 - 5.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결의한 조치
- 제14조(시행세칙)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된 시행세칙에 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신고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.



문서번호	BSKS-1-1-44
제정일자	2020.03.03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5/5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4.21.)에 의하여『산학처』를『산학취업처』로『기획실』을『기획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7.03.)에 의하여 본 규정 관련 업무를 『교학처』에서 『산학취업처』로 이관하고 2020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『교학처』를『교무처』로 ,『산학취업처』를『학생산학취업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